

## 「3·6·9 정기예금」 특약

### 제1조 적용범위

「3·6·9 정기예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『거치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### 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### 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.

### 제4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.

### 제5조 최저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 단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에서는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

### 제6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(이하 “기본이율”이라고 함)로 설편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설편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 중도해지 이율은 매 3개월 지정일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시점에 결정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, 지정일 이외의 중도해지 시에는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적용합니다.
- ③ 내집마련, 자녀의 결혼, 출산, 유학, 은행이 지정하는 거치식 상품(예금, 집합투자상품, 신탁)으로 전환 및 대출상환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‘고단위플러스’ 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- ④ 3개월 지정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지정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 지정일로 하고, 지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지정일로 합니다.
- ⑤ 예금 만기 후 이자는 지급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설편 이자를 지급합니다.

### 제7조 이자지급방식

이 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합니다.

### 제8조 일부해지

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, 이율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 단, 일부해지 후 잔액은 3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4년 5월 23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,  
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.

<부칙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